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병무청장이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가 전자적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병역 기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하고, 병역 기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경합범을 분리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 신설).
-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항).
-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II. 검토 의견

1. 「의료법」 연계 개정 감안 필요(안 제77조의2제2항)

- 개정안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의료법」 제21조제3항¹⁾ 또한 함께 개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률안²⁾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시 관련 법률안의 심의경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2.26.)에서는 제77조의4제6항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진료기록의 제출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4)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6)을 함께 의결한 바 있음.

-
-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5, 김선영의원 대표발의)

2.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용어 수정 필요(안 제77조의2제2항)

- 개정안 제77조의2제2항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는 현행법 제65조제1항3)과 현행법 시행령 제137조4)에 따라 현역병이 ①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②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규정5)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이를 법률에서

-
- 3)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 5)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

○ 따라서, 개정안 제77조의2제2항의 문구를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로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 받는 대상에 법인·단체를 포함시키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생략)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u>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u>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u>사람은</u>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u>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u> ----- ----- ----- <u>자는</u> ----- -----.

– 4 –

-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기 도)